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1. 22 선고 2022가단524980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

담당변호사 양지환, 박성화, 황우여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1. 22.

주 문

1. C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2. 17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
가. 별지1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2. 2. 17. 접수 제193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
나. 별지1 목록 제2 내지3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. 2. 17. 접수 제1906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경정원

별지